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53 발의연월일: 2025. 5. 2.

발 의 자:이강일·강준현·김남근

김남희 · 김문수 · 김우영

김현정 • 민병덕 • 박상혁

박정현 • 염태영 • 이연희

이재관 · 정성호 · 정준호

허 영·황유하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되나, 최 근 정치적·정략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반복되 며 사법부의 판단과 형벌 효과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심각 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내란, 외환, 반란 등의 범죄와 같이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통제되지 않는 사면권의 행사가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 반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이에 특별사면 등의 범위 및 절차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사면절차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도입하여 사면권 행사의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의2).

법률 제 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복권의"를 "특별사면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다. 다만,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찬성하고 국회의 동의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편제2장의 죄를 범한 자. 다만, 같은 법 제87조제3호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과 같은 법 제103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편제2장의 죄를 범한 자. 다만, 같은 법 제5조제3호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은 제외한다.
- 3.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사면"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감형 및 복권 은 대통령이"를 "감형 또는 복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명단과 사유를 실시일 14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 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대통령의 배우자 또는 「민법」상 4촌 이내의 친족
- 2.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자
- 3.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파면 결정을 선고받은 자
-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자

제10조의2제1항 중 "복권 상신의"를 "복권의"로, "법무부장관"을 "대통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를 "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3호 중 "5년"을 "6개월"로, "부터"를 "부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에서"를 "제8항까지에서"로. "법무부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③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3명

- 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3명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위원 회의 의결로 그 이전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6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 가 진행중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에도 적용 한다.
- 제3조(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의 의2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u>복권의</u> 제한) (생	략)	제6조(<u>특별사면 등의</u> 제한)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없다. 다만,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에 관
		여한 위원 전원이 찬성하고 국
		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
		편제2장의 죄를 범한 자. 다
		<u>만, 같은 법 제87조제3호의</u>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과
		같은 법 제103조의 죄를 범한
		<u>자는 제외한다.</u>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편제2장의 죄를 범한 자.
		다만, 같은 법 제5조제3호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미수범은
		제외한다.
		3.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u>특별</u>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u>①</u> <u>대</u> 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u>감형</u> <u>통령이 특별사면-----감형</u> <u>및 복권은 대통령이</u> 한다. <u>또는 복권을 하려는 경우에는</u>

<u><신</u>설>

 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

- 1. 대통령의 배우자 또는 「민 법」상 4촌 이내의 친족
- 2.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자
- 3.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파면 결정을 선고 받은 자
-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자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 7 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 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u>복권</u> <u>상신의</u>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u>법무부장관</u>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생략)
-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이상 위촉하여야한다.
- ④ <u>공무원이 아닌 위원의</u> 임기 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신 설>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 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u>복권</u>
<u>의</u>
대통령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3명은 법무부장관이 추
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한다.
④ <u>위원의</u>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u>⑥</u>

되,	국	민의	알	권리	를	충	족현	할	필
요.	가	있는	. 등	의	사	유기	' }	있	는
경-	우어]는	사면	1심기	나위	원호	회기	}	달
리	의	결할	수	있다	} .				

- 1. 2. (생 략)
-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u>5년</u>이 경과한 때부터 <단서 신설>

<u>⑥</u>·<u>⑦</u> (생 략)

8 제1항부터 <u>제7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 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법무부령으로</u> 정한다.

<u>,</u>
1. • 2. (현행과 같음)
3
6개월
<u> </u>
<u> </u>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
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그
이전에 공개할 수 있다.
<u>⑦</u> ⋅ <u>⑧</u> (현행 제6항 및 제7항
과 같음)
<u>⑨</u> 제8항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